



◆비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시정조치

녹즙시장에 신규 진출한 대기업이 거액 현금 지급해 중소기업 영업망 뺏어간 행위 적발

공정거래위원회는 11 월 16 일, (주)비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
비락은 녹즙 생산전문중소기업체와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4 개 대리점에게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총 3 억 4,900 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.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, 비락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유제품 등의 방문판매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, 2008 년 경 후발주자로 국내 녹즙시장에 신규 진출한 이후 자신의 취약한 녹즙제품 영업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인 (주)참선진종합식품을 상대로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했다는 것.

비락은 2011 년 12 월부터 2012 년 3 월 기간 동안 경쟁사업자인 참선진종합식품의 4 개 대리점에게 자신의 소속 대리점으로 전환하는 대가로 녹즙 소비자 1 인당 5 만원을 기준해 최소 3,600 만 원에서 최대 2 억 원에 이르는 총 3 억 4,900 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.

비락의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대리점에게 상당한 규모의 현금 제공이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.

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수단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금 제공 규모가 4 개 대리점 연매출액의 최소 29.2%~최대 44.3%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고 과대한 이익제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.

이에 공정위는 비락에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.

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대기업이 국내 녹즙시장에서 자신의 자금력을 이용해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한 것을 확인해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소개하고,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, 향후 각종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가는 한편, 앞으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.

(끝)